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6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전용기・이수진・민병덕

이성윤 · 정준호 · 신정훈

김용만 • 이소영 • 황운하

김용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 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3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 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